

# 정의로운 기본소득의 재원을 찾아서

- 기본소득의 재원과 복지재원의 구분을 중심으로 -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 1. 기본소득의 재원과 복지재원은 구분되어야 한다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은 개인 단위로(개별성), 모두에게(보편성), 정기적으로(정기성), 자산 심사나 근로 요건 없이(무조건성), 현금으로(현금성) 지급되는 급여다. 심사절차가 없으므로 기존의 복지국가에서 엄청나게 낭비되는 사회복지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수혜자들도 신청서를 구비하느라 막대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진다. 그런데 이런 획기적인 복지확대가, 어찌 보면 황당하기까지 한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서 주목받고 선진국에서 실험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더 이상 노동에 기초한 복지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 산업혁명으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200만 개, 줄어드는 일자리는 710만 개, 즉 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전망했다. 물론 기술발전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긴다는 주장도 있고, 그 나름의 설득력 있는 논리와 근거도 있다. 이렇게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수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의 결말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설사 4차 산업혁명으로 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일자리의 총량이 증가한다고 할지라도 소위 ‘플랫폼 노동’의 증대로 고용형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에는 반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불안정노동자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당장 2017년 현재 미국의 경우 임시직 플랫폼 노동이 전체 노동공급의 34%인데, 2020년에는 43%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금민 2017).

이렇게 불안정노동자(Precariat)들이 양산되면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노동에 기초한 사회보험 제도는 불안정노동자에 가까운 사람들, 충분한 기여금을 낼 수 없으며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소득 활동자들을 포괄하는 것에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기본소득이 필요한 객관적 조건은 성숙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도 기본소득의 호응은 날로 커지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 다양

한 실험들도 전개되고 있다. 경기도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연 100만 원 지급)을 실시하고 있고, 전남 해남군을 필두로 한 몇몇 기초자치단체들은 농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소득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점점 우리 앞에 현실이 되어가는 기본소득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역시 재원마련이다. 기본소득에 대한 찬반과 상관없이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할 건데?’라는 질문은 항상 뒤따라온다. 그런데 기본소득의 재원조달방안보다 우선해야 할 것은 재원의 ‘정당성’이다. 무엇보다 ‘개별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1/n’만큼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재원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서 기본소득 전략은 기존의 교육, 의료, 주거, 보육 등의 보편 복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병행하는 것이므로 정당한 기본소득의 재원뿐만 아니라 복지재원의 출처를 각각 구분해서 제시해야 한다.

현재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제시한 것은 ‘공유부(共有富)’에서 나온 소득이다. 지식, 빅데이터, 토지, 생태환경, 금융, 각종 제도 등은 사회공통자본으로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유부이며, 원천적 소유권은 사회구성원 전체에게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은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누구나 기본소득을 누려야 하는 ‘권리론’이 도출되고 있다.

그런데 공유부 중에서도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지식, 빅데이터, 토지, 생태환경, 금융, 각종 제도 등이 ‘공유부’라는 것, 즉 인류가 함께 누려야 한다는 것에 ‘도덕적’으로 동의할 수 있어도 ‘1/n의 권리’가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 (자연자원을 포함한) 토지 및 생태환경, 주파수대역과 같은 ‘천연물’에서 나오는 소득은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으나, ‘인공물’인 지식, 빅데이터, 금융 제도 등은 ‘모두의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소득과 그 외의 다른 소득은 기본소득의 재원이 아니라 ‘복지재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이다.

## 2. 새로운 분배 정의론

정의로운 기본소득의 재원과 복지재원을 찾기 위해서는 분배 정의론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그런 학문 분야가 바로 ‘정치철학’이다. 말 그대로 ‘정치’철학은 국가 자체를 혹은 국가의 역할을 철학적 지평 위에서 다루는 학문이다. 국가가 개인의 재산권을 얼마나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 경제를 운영하는 제도의 원칙이 무엇인지, 개인의 타고난 능력 차이와 각 사람이 처한 사회적·환경적 조건의 차이를 어떻게 다룰지를 근본에서부터 검토하는 것

이 정치철학의 주된 임무 중 하나다. 정치철학의 주된 분야가 분배 정의인 까닭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정치철학에서 분배 정의에 관한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면 정의로운 기본소득의 재원과 복지재원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분배 정의론을 둘러싼 논쟁은 소득의 ‘결과’를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정의로운가에 집중되어 있었다. 불평등이 심화를 해소하기 위해 소득 재분배가 필요하다는 ‘당위’를 도출하고, 여기에 경제학적 논리가 따라붙는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소득의 ‘원인’이다. 원인에 따라 원인 제공자에게 ‘결과’를 귀속시키면 되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행위가 원인이라면 결과는 원인 제공자에게 귀속시키면 되고, 두 당사자가 서로 주고받는 쌍방행위의 경우에는 교환하는 것의 가치가 동등하면 되며, 원인 제공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원인 제공 정도에 비례하여 결과를 귀속시키면 된다(김윤상 2017, 24~24). 이렇게 보면 모든 불평등이 다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부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이다. ‘정당한 원인’에 의한 불평등은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 그것은 사회를 역동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든다.

물론 원인 제공자에게 결과를 귀속시키자는 논리로 모든 논란이 종식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정치철학은 원인을 제공하는 개인의 능력 자체를 둘러싸고 논쟁이 전개되어왔다. 원인 제공자인 개인의 자기소유권에 관한 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내 몸이 내 것이냐 아니냐는 자기소유권 논쟁은 ‘개인의 능력’이 소득의 원인인데, 그 능력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고 따져 묻는 것이다.

여기에는 크게 보아 두 개의 학파가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로버트 노직(Robert Nozick)으로 대표되는 자유지상주의인데, 이 학파는 자기소유권에 기반해서 사유재산권 절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상대편 학파는 존 롤스(John Rawls)로 대변되는 자유평등주의인데, 그는 개인의 능력을 ‘공동자산(common assets)’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기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왜냐면 능력이란 것이 개인의 순수한 노력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임의적인 요인, 즉 운에 좌우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롤스의 논리에 따르면 상당한 재분배가 가능해지고 정당화된다.

한편 이와는 다른 부류로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과 무관하게 주어진 천연물인 토지는 자기소유권과는 별도로 논의되어야 하고, 비록 자유지상주의처럼 자기소유권을 인정하더라도 토지와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은 공유의 대상이 된다는 주장도 전개되어 왔다(남기업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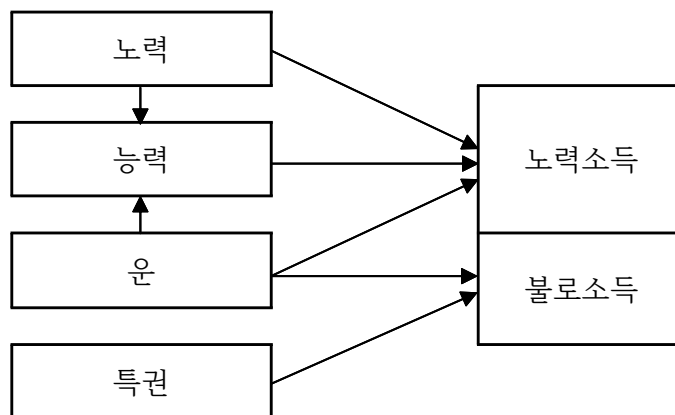
그렇다면 위와 같은 소득의 원인과 결과를 고루 담은 분배 정의론을 새롭게 구성할 수 없을까? 본 연구는 김윤상(2017)이 새롭게 제시한 틀이 유용하다고 본다. 그는 소득의 원인을 개인의 순수한 ‘노력’, 타고난 ‘운’, 그리고 ‘특권’으로 나눈다. 여기서 말하는 운은 선

천적 자질 및 성장 환경을 의미하고 ‘노력’은 그야말로 ‘운’이 개입되지 않은 원인을 말한다. 특권은 보통 노력과 운이 같더라도 남보다 더 많은 이익 또는 더 적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권한 또는 지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특권은 차별 및 배제를 통해 타인의 피해를 수반한다. 반면에 운은 당사자나 사회의 의도 또는 희망과 무관하게 우연히 발생하는 원인으로 인간이 통제할 수 없으며 타인을 차별하지도, 손해를 끼치지도 않는다. 물론 노력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노력과 운이 결합 되어 ‘능력’이라는 형태로 나타난다. 각자가 가진 능력을 자세히 뜯어 보면, 능력은 운의 영역인 타고난 재능과 가정의 분위기와 사회적 환경에 나의 노력을 가미해서 형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능력이 원인이 된 소득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는 것이 좋을까? 본 연구는 여기서 김운상의 구분에 따라 ‘노력소득’이라고 부르려 한다. 반면 개인의 노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운 자체가 낳는 소득과 특권이 만들어낸 소득을 ‘불로소득’이라고 부르려고 한다.

그러나 노력이 전혀 가미되지 않은 운 자체가 만든 불로소득과 특권이 만들어 낸 불로소득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운 자체가 만든 불로소득의 대표적인 예가 상속과 증여소득인데, 이것은 타인을 배제하지도 차별하지도 않는다. 다시 말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불로소득이 아니다. 반면 특권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배제와 차별을 낳고 타인의 손해를 수반한다. 다시 말해서 타인의 것을 가로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득의 원인과 결과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소득의 원인과 결과



그렇다면 여기서 부당한 소득은 무엇일까? 그것은 특권에 의한 불로소득이다. 흥미로운 점은 자기소유권을 강하게 긍정하는 이념인 자유지상주의도 특권에 의한 불로소득 사유(私有)를 옹호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백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노동을 제공하는 유색

인종에 비해서 더 많은 소득을 누리는 인종특권,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노동을 하는 여성에 비해서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남성특권, 좋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지 않은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학벌특권, 단지 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정규직에 비해서 훨씬 많은 임금을 받는 정규직특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하청 중소기업이 누려야 할 이익을 가로채는 대기업특권, 단지 토지를 배타적으로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사회가 만든 토지가치를 사유화하는 토지특권은 자유지상주의로도 옹호할 수 없다. 왜냐면 타인의 자기소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타인의 손해를 기반으로 하는 특권은 불가피하지 않으면 없애는 것이 좋다. 남성특권, 대기업특권, 학벌특권, 정규직특권 등이 작동하도록 방치시켜 놓고 그 특권이 낳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은 엄청난 비효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손해 당사자는 억울하기 때문이다. 이런 특권을 그냥 두면 사회구성원들은 생산적 활동보다 특권을 추구하는 지대추구행위에 몰두하게 된다. 지대추구행위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추구하는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지만 사회적으로 부를 생산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낭비적인 활동이다.

그러나 사회적 필요에 따라 부여하는 특권도 있는데, 그것은 양을 증가시킬 수 없는 천연물에 대한 특권이다. 천연물의 대표가 토지인데, 토지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배타적으로 취득 사용하는 것이 사회 전체에게 유리하다. 그런데 특정 토지를 특정인이 취득 사용하면 그 이외의 사람들은 취득과 사용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 가장 좋은 방법은 특권이 낳는 이익, 즉 생산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지대(land rent)’를 공유(公有)하는 것이다.<sup>1)</sup> 이렇게 하면 토지특권 속에 들어있는 독은 빠지게 된다.

한편 운에 의한 불로소득과 능력에 의한 노력소득은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는 완전 사유(私有)를 주장하고, 운의 중립화를 주장하는 자유평등주

1) 지대는 사회가 생산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회주의자 칼 마르크스, 시장주의자 헨리 조지, 진보적 자유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토지소유의 경제적 실현(또는 지대의 발달)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수성은, 지대액이 결코 지대수취자의 행동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는 무관하며 그는 어떤 역할도 하지 않는) 사회적 노동의 발전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점이다(Marx 1990, 786-787).

지대는 토지에서 자연히 생기는 것도 아니고 토지소유자의 행위에 의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지대는 사회 전체에 의해 창출된 가치를 대표한다. 사회에 다른 사람이 없다면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 보유로 인해 생기는 모든 것을 갖게 해도 좋다. 그러나 사회 전체가 창출한 지대는 반드시 사회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한다(George 1997, 352-353).

무릇 어떤 사회에서든지 부를 증진하는 방향의 통상적 발전은 언제나 지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경향을 가진다. 그들이 치르는 어떤 수고나 지출과 상관없이 액수로 보든 공동체 전체의 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보든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지는 것이다. 말하자면 일하지도 않고 위험부담을 무릅쓰지도 않고 절약하지도 않으면서 잠자는 동안에도 그들은 더 부유해진다. 사회정의라는 일반적 원칙에 비춰 볼 때 이런 식으로 부를 취득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Mill 2010, 186)

의는 상당 부분의 공유(公有)를 주장하는데, 사실상 이 상반된 주장들은 논증 불가능한 전제인 자기소유권에 대한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아무리 논쟁을 해도 서로가 서로에게 논박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런 논의와는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공유를 한다면 노력이 가미되지 않은 운에 의한 불로소득이 우선적인 공유의 대상이어야 한다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상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특권이익은 정당성이 없는 불로소득이므로 공유의 대상이다. 단, 불필요한 특권, 즉 남성특권, 인종특권, 대기업특권, 정규직특권 등은 제도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둘째, 운에 의한 불로소득과 능력에 의한 노력소득은 자기소유권에 대한 입장에 따라 공유와 사유의 여부가 결정된다. 단, 사회적 필요가 있다면 공유의 우선적 대상은 운에 의한 불로소득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당한 공유의 순서는 특권에 의한 불로소득, 운에 의한 불로소득, 능력에 의한 노력소득, 노력에 의한 노력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 3. 천연물 불로소득이 기본소득의 재원이다

이제 2장에서 정리한 분배 정의론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의 재원과 복지재원의 출처를 찾아보자.

다른 무엇보다 ‘개별성’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기본소득의 재원은 개개인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즉 ‘모두의 것’에서 나온 소득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유부’가 열거하는 지식, 빅데이터, 토지, 생태환경, 금융, 각종 제도 등을 ‘모두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좀 더 엄밀하게 살펴보기 위해 공유부를 출생을 중심으로 천연물과 인공물로 나누어 살펴보자. 토지와 자연자원과 환경과 주파수대역은 천연물에 속하고, 지식과 빅데이터, 금융과 각종 제도 등은 인공물에 속한다. 천연물은 주어진 것이고 양을 늘릴 수 없으며 인공물은 인간이 노력해서 만든 것이고 양을 늘릴 수 있다.

그렇다면 천연물은 모두의 것인가? 아니면 특정인의 것인가? 당연히 모두의 것이고,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개별적인 권리를 가졌다고 주장할 수 있다. 천연물이 존재하는 데에 인간은 어떤 노력도 보태지 않았다. 더구나 그 양을 늘릴 수도 없다. 이런 까닭에 사유재산권을 옹호하는 로크와 노직도 천연물에 대한 소유권을 논할 때 ‘단서’를 둔 것이다. 반면 인공물은 모두의 것인가? 예컨대 우리가 사용하는 지식이 인류가 누대로 쌓아온 것이 맞고

빅데이터도 모두가 기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그 지식과 빅데이터를 만드는 데 누가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인류 전체가 1/n씩 기여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천연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1/n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인공물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천연물과 인공물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성격을 살펴보자. 먼저 천연물에서 나오는 소득은 특권이익, 즉 불로소득이 분명하다. 토지의 위치와 면적은 한정되어 있는데 누군가 특정 토지를 취득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취득 사용 기회는 그만큼 사라지거나 줄어든다. 즉,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는 것이다. 탄소 배출권도 마찬가지다. 환경에는 오염을 허용할 수 있는 자연적 한도가 존재하는데 탄소 배출권은 그 한도 내에서 탄소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필요에 따라서 부여하는 특권이고, 그 특권을 특정인이 누리면 타인은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다. 그 밖에도 존재량이 한정된 자원을 채취할 권리를 설정하면 이것 역시 특권이고 그것을 특정인이 누리면 타인에게 손해를 본다(김윤상 2017, 35). 그러므로 토지사용권, 탄소 배출권, 환경오염권이라는 특권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해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존재론적으로 천연물 이어서 모두가 똑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소득의 성격상 타인의 피해를 수반하는 불로소득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공물에 의한 소득도 불로소득일까?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왜냐면, 예컨대 인류가 누대로 쌓아온 지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타인을 배제하거나 접근에 제약을 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불특정다수가 기여해서 만들어진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다. 빅데이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면 불로소득이라 할 수 없고 노력소득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관건은 인공물 사용에 배제나 제약이 있느냐다. 타인에 대한 배제나 접근의 제약이 있다면 그것은 특권이고 배제에 대한 대가인 지대, 즉 불로소득은 공유의 대상이 된다고 하겠다. 그리고 공유의 대상이 된 인공물에 의한 불로소득은 원칙적으로 모두의 것이 아니므로, 즉 모두가 개별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없고 복지재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당한 복지재원은 인공물 특권이 낳은 불로소득 말고 없는 것일까? 개인의 능력을 공동자산이라고 보는 롤스의 입장에 따르면 운에 의한 불로소득과 능력에 의한 노력소득도 재분배의 대상, 즉 복지재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롤스가 말한 ‘공정한 기회균등’과 ‘차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직의 자유지상주의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자유지상주의는 운에 의한 불로소득과 능력에 의한 노력소득이 공유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의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난관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세운 기본소득 전략은 기본소득과 함께 교육과 의료 등에 대한 복지도 지금보다 훨씬 두터워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 많은 복지가 필요하다는 ‘필요론’은 근거가 될 수 없다. 필요에서 당위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유재산을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자유지상주의 내에서 더 많은 복지재원을 마련할 논리를 찾아야 한다.

자유지상주의의 대표 사상가 노직이 소유권 이론으로 내세운 원칙은 ‘취득의 원칙’(the principle of justice in acquisition), ‘이전의 원칙’(the principle of justice in transfer), ‘교정의 원칙’(the principle of rectification of violation of the first two principles)이다 (Nozick 1991, 236-237). 계약 상황에 있는 개인들이, 취득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았다면, 취득한 소유물을 자발적으로 교환했다면 소유는 정당하고, 만약 이 둘을 위배했을 시에는 시정 하면 된다는 아주 간단한, 반박하기 힘든 원칙을 그는 제시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취득의 원칙’이다. 그의 소유권 이론에 따르면 취득이 잘못 되었을 경우 ‘교정의 원리’에 회부 되어야 한다. 한 개인의 소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수반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취득 시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느냐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보면 노직의 논리로는 운에 의한 불로소득과 능력에 의한 노력소득에서 복지재원을 마련할 근거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시장경쟁에서 취득하는 과정을 들여다보면 근거를 찾을 길이 열린다.<sup>2)</sup>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장경쟁 과정에서 타인에게 침해를 가하지 않는 ‘취득의 원칙’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여 ‘교정의 원칙’이 따라붙어야만 한다. 취득의 원칙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완전경쟁’이라야 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경쟁자들이 모두 똑같은 노동능력과 자본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경쟁에 참여하는 누구도 경쟁의 과정과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의 경쟁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쟁 참여자가 경쟁의 과정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현실에 존재하는 경쟁이 이렇게 불완전 경쟁이므로 이 경쟁을 통해서 취득한 소득은 불가피하게 교정의 원리에 회부 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설사 완전경쟁의 조건에서 출발했다라도 취득의 원칙은 다음 단계의 경쟁에서 훼손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경쟁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처음엔 모두가 똑같은 노동능력과 자본을 가지고 경쟁에 참여했다고 가정해보자. 여기까지는 교정의 원칙은 불필요하다. 취득 시에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첫 번째 경쟁에서 승자는 더 많은 몫을 차지하게 되는데, 문제는 첫 번째 경쟁에서의 그 승자가 다음 단계의 경쟁에서 다른 경쟁자보다 더 많은 자본을 가지고 경쟁에 참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다른

2) “시장체제의 자유로운 작용이 로크의 단서와 실제로 충돌하지 않을 것”이라는 노직의 주장에서 그의 소유권 이론이 ‘시장’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Nozick 1991, 278)



조건이 똑같다면 자본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경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것은 경쟁을 반복하면 할수록 더욱 강화된다. 다시 말해서 취득의 원칙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장하성 2014, 433-436). 이렇게 하여 우리는 시장경쟁을 통해서 얻는 소득은 교정의 원칙에 회부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교정의 원칙에 회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것은 운에 의한 불로소득뿐만 아니라, 능력에 의한 노력소득도 공유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 결국 이것을 복지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마련한 복지재원은 경쟁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힘을 균등하게 만드는 데 투입되어야 한다.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능력으로 바꿀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곳에, 아플 때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저가(低價)·양질(良質)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그리고 시장에서 탈락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곳에 투입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노직이 말하는 '취득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상태에 근접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자기소유권 인정 여부로 자유지상주의와 논쟁하면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지만, 취득의 원칙이 적용되는 현장인 시장경쟁으로 들어가면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된다. 요컨대 시장경쟁에서 얻은 소득을 교정의 원칙에 회부시키면 평균 이상의 소득은 복지재원의 대상이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이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천연물은 모두의 것이고 모두가 개별적으로 1/n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천연물에서 나오는 소득은 성격상 특권에 의한 불로소득이고, 따라서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

둘째, 인공물은 모두의 것이라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모두가 개별적으로 1/n의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며, 인공물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 중에 배제와 접근의 제약이 있는 것만 특권에 의한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인공물 특권에 의한 불로소득과 운에 의한 불로소득, 그리고 능력에 의한 노력소득은 복지재원으로 삼는 것이 적합하고, 이것은 사유재산권 절대주의로 알려진 자유지상주의로도 논증이 가능하다.

〈그림 2〉 기본소득의 재원과 복지재원 분류

소득의 원인	소득의 결과	기본소득/복지	예
특권	천연물 불로소득	기본소득 재원	토지, 탄소, 환경, 자연자원, 주파수대역
특권	인공물 불로소득	복지재원	빅데이터 등
운	운에 의한 불로소득	복지재원	상속과 증여
능력(운+노력)	능력에 의한 노력소득	복지재원	법인소득, 개인소득

#### 4. 요약 및 결론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전국 농촌에서 시작한 농민 기본소득과 같은 ‘범주형 기본소득’(특정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자산조사, 소득수준, 근로조건 없이 조세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급여)은 이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호응도가 점점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한 액수는 아니지만 최소한의 액수를 지급하는 ‘부분 기본소득’의 실현도 머지 않았다고 본다.

기본소득이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절박성 때문이다. 불평등 심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불안정노동자의 증가 현상은 과거 노동을 기반으로 한 복지제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절박성과 맞물려서 기본소득이 보편적 설득력을 얻으려면 기본소득이 시혜가 아니라 ‘권리’라는 것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원래 내 것이었는데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온다는 논리적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1/n 권리로 제시된 것이 ‘공유부’이다. 지식, 빅데이터, 토지, 생태환경, 금융, 각종 제도 등은 사회공통자본으로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유부이며, 여기서 나온 소득은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유부 중에서 천연물은 모두가 개별적으로 1/n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어도 인공물 공유부는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천연물 공유부에서 나온 소득은 특권에 의한 불로소득이고, 인공물 공유부에서 나온 소득은 불로소득도 있지만 능력에 의한 노력소득이 주종을 이룬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천연물 공유물에서 발생한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인공물 공유부에서 나온 불로소득은 복지재원이 더 적합하다고 하겠다. 그리고 복지재원의 또 다른 원천은 운에 의한 불로소득과 능력에 의한 노력소득도 그 대상이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결론이 노직 류의 자유지상주의의 논리에서도 도출된다는 것이다. 노직이 제시한 소유 정의론에서 가장 중요한 ‘취득의 원리’를 제대로 적용하면 운에 의한 불로소득과 능력에 의한 노력소득은 교정의 원칙에 회부 될 수밖에 없으며, 결국

복지재원이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이렇게 마련된 복지재원은 충분한 교육과 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실업 상태에서 다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집행에 투입되어야 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노직이 말한 ‘취득의 원칙’이 작동 가능한 상태를 조성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천연물에 의한 불로소득이 환수되어 기본소득의 재원이 되면 이로 인한 불평등과 비효율은 사라진다. 이것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2016년 한 해에만 374.6조 원(GDP의 22.9%)이었다는 것에서 그 효과의 크기를 짐작해볼 수 있다(남기업 외 2018). 그뿐 아니라 천연물의 낭비와 오염도 줄어드니 생태환경 보존의 가능성도 제고된다. 거기에 더하여 인공물에 의한 불로소득과 운에 의한 불로소득, 그리고 능력에 의한 노력소득에서 복지재원을 조달하면 인간의 실질적 자유는 놀라울 정도로 신장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금민. 2017. 9. “기본소득은 사회공통자본의 평등한 배당.” 《Economy 21》. 443호
- 김운상. 2017. 『이상사회를 찾아서 : 左道右器의 길』. 경북대학교출판부.
- 남기업. 2018. “자유지상주의와 토지정의.” 김운상 외.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경북대학교출판부. pp. 83~101.
- 남기업 외. 2018. “부동산과 불평등.” 김운상 외.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경북대학교출판부. pp. 143~160.
- 장하성. 2014. 『한국 자본주의 : 경제민주화를 넘어 정의로운 경제로』. 헤이복스.
- George, Henry 저·김운상 역. 1997. 『진보와 빈곤』. 비봉출판사.
- Marx, Karl 저·김수행 역. 1990, 『자본론 Ⅲ(下)』. 비봉출판사.
- Mill, John Stuart 저·박동천 역. 2010. 『정치경제학 원리 4』. 나남.
- Nozick, Robert 저·강성학 역. 1991. 『자유주의 정의론』. 대광문화사.